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9
----------	-----

2009년 7월 9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2009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김재환)

가. 폐지사유

- 「평생교육법」(전부개정 2007. 12. 14 법률 제8676호)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두었던 시·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2009. 3. 18 조례 제4744호)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폐지조례안은 2007. 12. 14.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었던 시·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09. 3. 18. 서울특별시에서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로 담당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2009. 3. 12. 서울시교육감 소속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놓은 상태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889
----------	-----

제출년월일 : 2009년 6월 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폐지사유

「평생교육법」(전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6호)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두었던 시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2009.3.18 조례 제4744호)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근거법규

「평생교육법」 제12조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붙임
- 2)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생략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